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3.3.23>

**항만운송사업자·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 (제17조 관련)

경비 부담의 주체	교육훈련의 대상	경비 부담의 방법
1. 항만하역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사람	하역 실적에 따라 경비를 부담하고, 그 방법 및 요율(料率)은 교육훈련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검수·감정·검량 사업자 및 항만운송 관련사업자	검수·감정·검량 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사람	교육기간·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3. 개별적으로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고용되려고 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교육기간·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